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8517
----------	-------

제안연월일 : 2026. 4. .

제안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2208245	강명구의원	2025.2.18.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5.4.28.)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
2216113	이인영의원	2026.1.16.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6.3.31.)

가.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4.1.)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6.4.2.)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특수임무유공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4 및 제75조의5 신설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4 및 제7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4(고독사 예방 및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를 고독사(「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5(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5조의4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80조의2제1항에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4. 제75조의4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제82조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75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75조의4(고독사 예방 및 관리)</u></p> <p>① <u>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 유공자를 고독사(「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② <u>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p> <p>③ <u>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u></p> <p>④ <u>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u></p>

<신 설>

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5(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5조의4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
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
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
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
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
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
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
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
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10의3. (생략)

<신설>

11. ~ 13. (생략)

② ~ ④ (생략)

제8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의2. (생략)

<신설>

3. (생략)

② (생략)

-----.

-----.

1. ~ 10의3. (현행과 같음)

10의4. 제75조의4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1. ~ 1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2조(벌칙) ① -----

-----.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제75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